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25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2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 ①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내용에 따라 기(既) 인증 받은 제품에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제조업체가 새로운 안전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 안전기준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① 안전기준 개정시 기(既) 인증제품의 유예기간을 유형별로 차등적용하도록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 함

현 행	개 정
제11조 (안전기준 개정시 기 인증 대한 유예기간 적용) (신 설)	제11 (안전기준 개정시 기(既) 인증제품에 대한 유예 기간 적용) ① 안전인증기준 개정시 기(既) 인증 제품의 유예기간은 다음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안전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안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17조의 3에 의한 전문위원회에서 기준변경 내용과 그 시급성을 검토하여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신설〉	1. 표시라벨·사용설명서 등 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1년이하로 한다. 2. 인증제품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1년이상 2년이하로 한다. 3. 인증제품의 설계·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안전기준 개정시에는 2년이상으로 한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 09. 1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관련 내용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전화번호 : 02-509-7242 (FAX : 02-507-6657)

